

# 일본의 리걸테크 시장 현황 및 전망



기고

최현운

법무법인 린 변호사·변리사

일본 리걸테크 카오스 MAP 2023년 판에 따르면 변호사닷컴 이외에도 일본에서 운영 중인 리걸테크 회사는 약 60여개 정도로 파악되는데, 야노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리걸테크의 시장 규모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 약 228억 엔(2000억 원)의 시장이던 것이 2023년에는 353억 엔(32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두기업 변호사닷컴은 2014년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래로 2023년 결산시 연매출이 87억 1000만 엔(약 800억 원)인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난 8월 1일자로 공표된 일본 변호사법 관련 법무성의 가이드라인(지침)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 법률상담플랫폼과 전자계약 서비스

변호사닷컴(벵고시닷컴 弁護士ドットコム, 대표이사 모토에 타이치로)은 한국으로 치면 로톡, 엠박스, 모두싸인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종합 리걸테크 기업입니다. 현재 일본 변호사의 절반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법률상담플랫폼인 '모두의 법률상담' 이외에도 법률전문서적 리서치 툴인 BUSINESS LAWYERS LIBRARY, 전자계약 서비스인 '클라우드사인' (누계계약 송신건수 1000만 이상의 계약데이터, 계약사용자수 230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닷컴의 '클라우드사인' 시스템(https://www.cloudsign.jp/)은 현재 약 130만개의 일본기업들이 사내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현재 일본에 설립된 기업의 수는 약 400만개). 또한 변호사닷컴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전자계약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계약 체결건수의 67.2%입니다.

챗GPT 출시 이후를 기점으로 일본 로펌들도 내부 업무 효율화, 고객 상담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4대 로펌 중 한 군데인 나가시마 오노 츠네마츠(長島・大野・常松法律事務所)의 변호사들이 80억원을 출자하여 2018년에 창업한 CLM(계약 라이프사이클 관리) 서비

스 '몬테스큐(MTSQ)'도 기존에는 기계학습·자연어 처리기반으로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해오다가 올해 5월부터 LLM 기반의 검토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고, 기존 서비스 사용자들 중에 Fine Tuning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사용자들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변호사닷컴이 지난 15년간 운영한 '모두의 법률상담' 사이트에 축적된 약 125만건의 상담 사례를 챗GPT에 학습시켜 '챗GPT를 활용한 무료 AI법률상담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하였으며, Legaltech 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자와(伊澤文平) 변호사가 창업한 Call a Lawyer社가 AI 변호사가 전화로 무료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AI 계약심사서비스

일본의 계약심사서비스(AI契約書レビューサービス)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 검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기능을 가집니다. (1) 계약서 작성기능은 용도, 상황에 따라 제작된 수백종의 기본 템플릿 중 하나를 다운로드한 후, DB에 보관된 조문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추출,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합니다. (2) 계약서 검토기능은 계약서 PDF 파일 등을 소프트웨어에 업로드하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고려할 유불리가 있는 표현을 확인하고, '잘 쓰여진' 기존 양식과 비교하여 부족한 단어나 조문을 지적한 후 추천안을 제시합니다. 최선책(추천조문)과 차선책(옵션조문)을 제안하는 동시에, 별도 해설란을 만들어 검토 논점 및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협상안을 대응순위가 나열된 형태로 도출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검토시 특정 조문(예를 들어 제00조 지적재산권)을 클릭하면 DB에 저장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다른 계약서상 다수의 기재례를 열람해 참고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오타자는 모두 수정되고, 수정한 결과에 대하여 친구조문의 대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비스에 가입,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과거 사용 이력을 추적하여 작성검토한 계약

이나 관련 계약들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AI 계약심사서비스' 관련 사업자로 는 리걸온테크놀로지스(Legal On Technologies), GVA테크社 등이 있으며, 변호사닷컴(벵고시닷컴) 역시 최근 주식회사 리세(Lisse)와 협업을 가속화하며 해당 서비스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GVA 테크社의 홍보자료 중 발췌>참고

리걸온테크놀로지스가 제공하는 AI 계약심사 서비스인 '리걸포스'는 현재 도입 기업 수 2500곳, 법률사무소 60곳을 돌파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자리잡았습니다. GVA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테크회사인 GVA테크는 법인등기 자동접수시스템, 계약심사 클라우드, 법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회사이고, 일본 내 인지도가 있는 기업입니다.

### 일본 변호사법의 내용과 법무성(법무부)의 가이드라인

법률상담플랫폼의 경우, 2018년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으며, '단순 광고'는 허용하지만 '알선'은 위법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전자계약 서비스는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법 상 '그레이존 해소제도'에 의해 '사업자 서명형 전자계약 서비스'를 정하고 있으며, 전자서명법 2조 1항에서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계약심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제72조 위반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가, 2022. 10. 14. 산업경쟁력 강화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회답에서 법무성이 "AI 계약심사 서비스가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원칙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법무성 견해의 요지는 (1) AI계약서 심사서비스는 개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타 일반 법률 사건'을 취급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2) 검토 대상 계약서의 조항 등의 법률 효과에 대해 평가를 더한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며, 이들은 법률상의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 법률적 견해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감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법무성은 해당 서비스를 1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으로 한정하는 경우"로서 『변호사...가 업무로서 법률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본 건 서비스를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용자 회사 소속 사내 변호사의 감독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변호사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일, 일본 법무성은 'AI를 이용한 계약서 등 관련 업무 지원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이러한 계약심사 서비스에 대하여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위반하지 않는

### 참고 <일본 변호사법 제72조>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이 아닌 자는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소송사건, 비송사건 및 심사청구, 이의신청, 재심사청구 등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기타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혹은 화해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들의 주선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없다. 단,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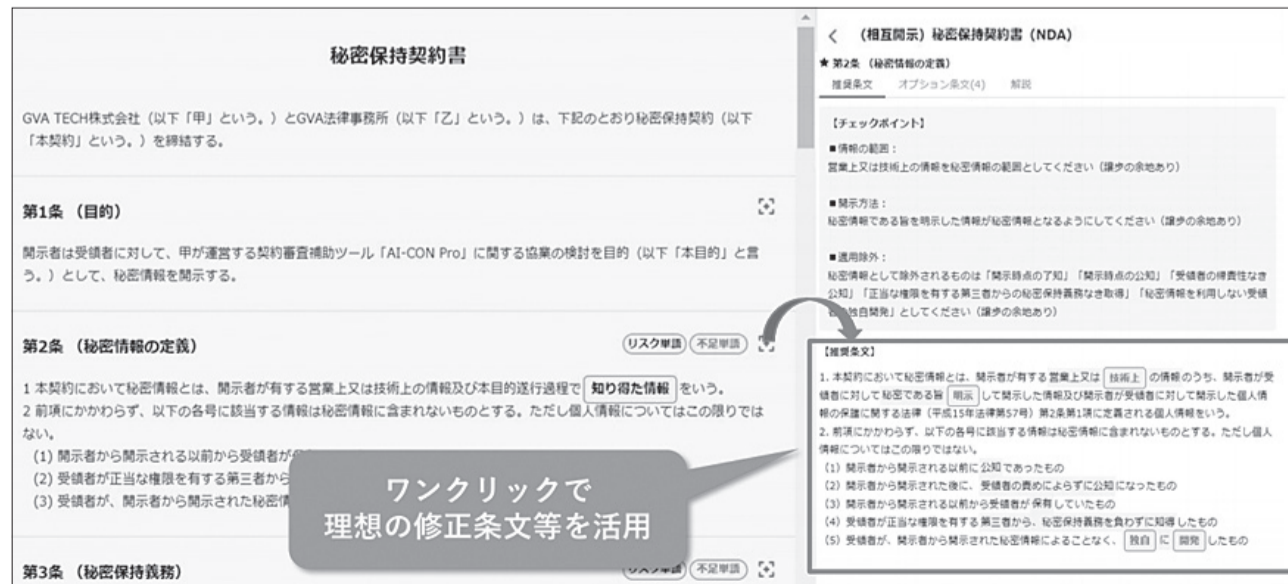
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1) 변호사법 제72조에 제시된 '보수를 얻는 목적' '법률상 다툼이나 의문이 있는 안건' '법률상 전문적 지식이 기초해 법률적 견해를 밝힐 것' 이라는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리걸테크의 제공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2) 만약 전술한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변호사법인(법무법인) (4-1항) 또는 당사자인 기업의 사내변호사(4-2항)가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작년 10월에 발표된 지침에서 나아가 기업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업계는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걸온테크놀로지스, 리세, MTSQ 등은 8월 둘째주에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변호사닷컴도 법무성 판단에 힘입어 「계약업무」 「컴플라이언스 체크업무」 「문서작성업무」 「리서치·듀얼리전스 지원업무」 「법률상담업무」 「변호사(법률사무소, 기업내 포함)용 업무」의 6개 사업영역에서 AI를 활용한 21개 서비스의 확대를 가속화하겠다는 내용의 IR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DX(디지털전환) 추세에 맞물려 이번 가이드라인이 일본 리걸테크 시장에 가져올 파급력과 일본 법률서비스 시장의 발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AI 기반 법률서비스의 도입과 활용 범위에 대한 산업계와 법조계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챗 GPT' 시대를 맞은 우리 법조계가 법률서비스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리걸테크의 활용방안과 파급력, 적절한 허용 및 관리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관련 산업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물론 여러 나라가 분석,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GVA테크社의 홍보자료 중 발췌)